

공무원이 아닌 자가 위원으로 위촉됐을 때에는 회의출석에 따른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나 이 건 조례에는 회의출석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조문이 누락되어 있어 이 또한, 재고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이 됨.

파주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가. 안건요지

1997년 9월 9일 건축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파주시건축조례중 일부내용에 대한 수정이 불가피하여 상정된 조례개정안으로서 먼저, 안제5조 건축위원회 심의대상에 건축선의 지정에 관한 사항과 도시 설계안의 심의 등을 추가하여 위원회 심의기능을 확대하였고,

조례안 제16조에서는 가설건축물 설치허가(신고)기준을 신설하여 그동안 많은 논란이 되어온 가설건축물에 대한 행정처리의 근거가 명확해 졌으며,

기존의 조례 제22조에 규정을 두었던 특정 여건의 건축물에 대한 미술장식품 설치 조항은 문화예술 진흥법 시행으로 건축법 및 우리시 조례에서는 삭제되었음.

그밖에 용도지역별로 허용하는 건축물의 범위를 다소 완화하는 내용으로서 일반 주거지역에는 식물관련시설을, 준공업지역에서는 일반판매시설을, 보존녹지지역에서는 일반단독주택을, 생산녹지지역에서는 일반 단독주택과 사업계획 승인대상이 아닌 다세대 주택 및 연립주택의 건축이 가능하게 되었으며,

안제37조 내지 제47조에서는 건폐율, 용적율과 건축선에 관한 규정등 개정된 상위법과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일부용어와 내용을 수정하고 있음.

나. 검토의견

이 건 개정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른 관련조례의 규정내용을 수정하려는 것으로서 타당한 조치로 판단됨.

그러나, 개정안 가운데 가설 건축물의 용도, 규모, 구조등 설치기준을 정한 제16조 각항의 내용을 살펴보면, 단독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이나 소규모 폐기물 처리시설 및 공해배출시설과 같이 단기간 존치 성격을 벗어난 건축물의 경우 입법취지에 의한 가설건축물로 보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 도시계획사업시행이 상당기간 불확실한 현실을 감안할 때 쟁송의 여지가 없도록 제도적 보완이 요망되고,

부칙 제3조의 「이 조례 시행전 신청된 허가건의 경우 종전조례에 의한다」라는 부분은 이미 상위법이 '97. 9. 9일 개정된 사실을 감안할 때 경과 규정으로서 타당치 않을 뿐 아니라 법규 적용의 일반원칙에도 배치되는 것으로 판단되는 바 재검토가 요망됨.